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송보상금제도 신설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62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전송보상금제도 신설(안 제75조, 제82조)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헌승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3. 18.

다.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확대되어 권리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전송보상금제도 신설(안 제75조제1항, 제82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75조제1항 본문).
-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송하는 경우에도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안 제82조제1항 본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u>방송하는 경우에는</u>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 ----- <u>방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 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u>방 송하는 경우에는</u> 상당한 보상 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 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 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 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 에 대한 보상) ① ----- -----<u>방 송하는 경우에는(그 방송한 영 상물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 -----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방송’과 ‘전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방송사업자가 상업
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상업용 음반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전
송’¹⁾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인 전송권²⁾을, ‘방송’에 대해서는

1)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할 경우 사후에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한다면 사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음악저작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함.

○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IPTV 등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현행법이 콘텐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송보상금제도를 신설하여, 방송사업자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들이 OTT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을 개별 저작권접권자와의 사전 협상 없이 ‘사후 보상’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방송사를 통해 제작되는 다수의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에 IPTV나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유통구조를 반영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OTT 등을 통한 콘텐츠

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용형태	동시성	쌍방향성	주문성
전송	x	o	o
방송	o	x	x

2) 「저작권법」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유통의 활성화·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에만 적용하던 상업용 음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OTT, VOD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곤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별첨 [참고3]과 같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관련 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역시 저작권접권자의 권리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안 심사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사전 허락 대신 사후 보상을 통해 방송사업자 등이 음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접권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어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후 보상의 영역을 ‘전송’까지 확대할 경우 저작권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 둘째, 방송보상청구권 제도는 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의무 등을 감안하여 국제 조약에서 허용하고 있으나,³⁾

3) 【WIPO실연음반조약(WPPT)】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의 경우, WIPO 실연음반 조약(WPPT)⁴⁾ 및 한-미 FTA 등 다자·양자 조약에서 ‘배타적 권리’ 형태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존재하므로 국제조약 내지 한·미 FTA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재량에 한계가 있고, 독일, 일본, 영국 등 WPPT에 가입한 주요국 중에서 전송 행위를 사후보상금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며,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라는 것임.⁵⁾

- 개정안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제74조 및 제81조와 충돌된다는 입장임.⁶⁾

○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첨 [참고3]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사들의 의견을 취합한바**, 방송사가 이미 OTT 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고, OTT 등 전송을 위해서는 권리의 사전 허락이 필수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오히려 이중지급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보상금 산정 범위 및 주체를 해

제15조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전달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4) 1996년 12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07개국이 가입하였음.

5) [참고 1] 전송권 관련 국제 조약 및 해외 입법례 참조

6)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서 전송권을 부여하면서 채권적 보상청구권까지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석함에 있어 사업자간 견해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676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이상현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843호)과 이현승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99호)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법률명	관련 조문
WIPO 실연음반조약 (WPPT)	제10조(고정된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u>배타적인 권리</u>를 향유한다. 제14조(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u>배타적인 권리</u>를 향유한다.
한-미 FTA	제18.6조(저작인접권) 3. 가. 각 당사국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실연 및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u>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u> 그의 실연 또는 음반을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u>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u>를 제공한다. 나. 가호 및 제18.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의 아날로그 송신 및 무료 공중파 방송에 대한 적용과 그러한 행위를 위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은 각 당사국 법의 문제이다. 다.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0항에 따라 그 밖의 비쌍방향적 송신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공평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이 조 및 제18.4조의 목적상,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방송이라 함은 무선수단 또는 위성에 의하여 소리 또는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하며, 복호화 수단이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암호화된 신호의 무선 송신을 포함한다. <u>“방송”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송신 또는 공중의 구성원이 수신 시간과 장소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송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u>
일본 저작권법	제92조의2(송신가능화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제96조의2(송신가능화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영국 저작권법	제182CA조(공중에 이용제공을 위해 필요한 동의) (1) 실연자의 권리는 동의 없이, 자격 있는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의 복제물을 공중의 일부가 그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녹음물에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송신수단을 통해 공중에 이용제공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조에 따른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실연자의 권리는 이 편에서 “이용제공권”이라고 한다.(음반제작자를 저작권자로 보호)
독일 저작권법	제78조(공개재현) ① 실연자는 다음 각 호를 행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1. 실연의 공중전달 제85조(이용권) ①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 배포 및 공중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음반이 사업장에서 제작된 때에는 사업주를 제작자로 본다. 이 권리는 음반의 복제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명	의견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신중 검토> ○ 본 법안은 OTT 활성화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 방송사(지상파, 종편·보도PP) 회람 결과, △방송사가 이미 OTT 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고, OTT 등 전송을 위해서는 권리자의 사전허락이 필수인 점 등을 고려 시 개정안이 오히려 이중지급을 야기할 수 있으며, △넷플릭스 등 OTT가 방송사 제공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방송사에 보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해석될 우려 등을 제기 - 보상금 산정 범위 및 주체를 해석함에 있어 사업자간 견해 차가 존재할 수 있는 등 분쟁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저작권법 소관부처인 문체부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에만 적용하던 상업용 음반 실연자·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OTT, VOD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함

참고3

권리자단체 의견

단체명	의견 주요내용
(사)한국음악 실연자연협회	- 영상물의 전송권을 보상금화하는 것은 사업자 대상의 비즈니스 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권리의 세분화된 통제가 어려워 권리 보호 기반을 약화 시키는 결과 - 사업자 권리 처리의 효율화가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선제적 검증 필요
(사)한국음반 산업협회	-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OTT를 포함한 전송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적합하지 않음 - 현행법에서는 전송에 대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배타적인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한 보상청구권으로 축소 되는 결과를 초래 - 방송사업자에게 유리한 보상금 제도의 확대는 콘텐츠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초래 - 많은 국가에서 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국제적 기준과 상충하여 잠재적인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사)한국연예 제작자협회	- 사용자의 범위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자'로 확대하여 '상업용 음반'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방송', '전송'하는 자의 보상에 대한 전체 사용자 대상 포함이 필요 -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한국방송협회	현재 입법 제안 이유에는 방송사가 OTT 등을 통해 상업용 음반을 전송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전송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제안 이유와 개정안이 일치하지 않음
EBS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의하면,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OTT를 통해 방송사가 전송한 경우도 보상금제도를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방송사가 OTT를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 등 OTT를 통해 방송사의 콘텐츠가 전송된 경우까지 방송사에게 보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문구와 무관한 확대 해석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보상금제도를 방송사 VOD에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OTT 사업자에게 방송보상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별도로 선명한 문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채널에이	○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개정안은 실제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제공자인 방송사에게 저작권 처리 및 지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 ○ 개정안의 '방송·전송하는 경우' 문구는 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OTT로 전송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책임을 방송사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가 아닌 콘텐츠 제공자인 방송사에 부당하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음악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있기 때문에 플랫폼별 '최종 사용자'가 처리해야 하고, 실제 사용자가 사용 형태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사는 방송에서 사용된 상업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금에는 방송사의 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전송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고 있어, 이로써 모든 보상 책임을 완결하고 있으며 OTT 플랫폼에서의 전송은 전적으로 OTT 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방송사는 OTT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OTT에 대한 권한이 없는 방송사에 OTT 사업자의 저작권 처리 책임 및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원안유지 필요
TV조선	○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보상금제도로 저작권 단체와의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이 통과될 시, 추후 법 조항에 근거하여 과도한 보상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또한 OTT 플랫폼으로 방송프로그램이 유통될 경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자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임. 영상물 전송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제공사업자인데, 개정되는 법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보상의 책무를 방송사업자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당함 ○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배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상금청구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MBN	○ 방송사업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상업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상업용음반에 대해 보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본 개정안으로 방송사업자는 이중으로 보상금을 부당하게 부담할 우려가 있음 ○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 등을 유발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큼 ○ 방송보상청구권 제도는 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의무 등을 감안하여 국제 조약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음악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권의 경우,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및 한-미 FTA 등 다자·양자 조약에서 '배타적 권리'형태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YTN	○ 음실련(음악실연자연협회)은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초로 방송보상금을 징수해 감. 위 '매출액'에는 a. 방송프로그램 제공매출액, b. 방송프로그램 판매매출액, c. 광고매출액이 포함됨. 따라서 방송사업자가 OTT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판매한 것에 따른 보상금은 기존 '방송보상금' 납부로 이미 계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방송사업자가 OTT에 제공한 콘텐츠는 OTT 매출 발생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매출수익은 OTT에 모두 귀속됨. 그런데 이를 방송사업자에게 '전송보상금'으로 재징수하겠다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할 수 있고, 콘텐츠 전송에 따른 매출 귀속 형태를 보더라도, '전송'에 따른 보상금은 이를 전송함으로써 매출을 올린 OTT 사에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연합뉴스TV	○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미디어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사와 이용자의 사용형태를 반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스템 개선, 권리자의 합당한 저작권료,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등 저작권 산업 및 방송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JTBC	○ 본 개정안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며, △미디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권리의 성격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함
PP진흥협회	○ 전송보상금 마련에 관한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 - 다만, 전송에 대한 보상금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전송행위를 한 주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
IPTV협회	○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콘텐츠웨이브	○ 방송보상금 제도를 전송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에 동의 - 다만,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OTT사업자에 대한 전송보상금제 적용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OTT사업자에 대한 전송보상금 규정도 별도 신설 검토 필요
LG전자	○ 전송사업자가 동일콘텐츠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제3자 전송' 보상금 지급분을 전가받고, 동시에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별도로 전송사용료를 지급하는 이중지급 문제 발생 우려
삼성전자	○ 방송사업자가 이미 전송까지 권리처리를 완료한 음원일 경우 보상금 이중 지급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본 개정안은 전송권에 더해 보상금 청구 권리를 중첩으로 보유하게 되어 권리의 중첩을 가져와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 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국제조약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함 ○ 방송과 전송의 차이점을 간과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중복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